



제 1220호

2015년 2월 24일 화요일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조례 제122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조례 제122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6
○ 조례 제122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공
고

○ 공고 제2015-	34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직권말소 공고	14
○ 공고 제2015-	346호	2015년도 연근해 어선장비(기관) 지원사업 신청 공고	15
○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5-	18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20
○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5-	19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21

회 람								
--------	--	--	--	--	--	--	--	--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2월 24일

남동구 조례 제122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915명” 을 “948명” 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895명” 을 “928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915명” 을 “948명” 으로 한다.

별표 2,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리기관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각각 해당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5% 이내	35% 이내	28% 이내	4% 이상

비 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비 율	-	50% 이내	50% 이상	-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동
총 계		948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945	-				
	2급	1	1				
	4급	6	4	1	1		
	5급	62	33	2	7	1	19
	6급 이하 계	876	-				
별정직 계		2	-				
	5급 상당	-	-				
	6급 상당 이하 계	2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2015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증원인력 및 복지담당공무원 확충인력을 반영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와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을 운용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변경 : 915명 → 948명 (제2조)
 - 집행기관 : 895 → 928명
 - 의 회 : 20명
-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별표3)

구 분		조 정 내 역		증 감
		현 행	조 정 (안)	
총 계		915	948	+33
직급별	일반 계	905	938	+33
	5급	61	62	+1
	6급 이하	844	876	+32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2월 24일

남동구 조례 제122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과장·지소장”을 “과장·지소장, 사업소의 장”으로 한다.

제3조 중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국, 주민생활국, 경제환경국 및 건설교통국”을 “기획예산실, **혁신전략추진단**, 안전총괄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국, 주민생활국, 경제환경국 및 건설교통국”으로 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각각 제4조의3부터 제4조의5까지로 하고, 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혁신전략추진단) 혁신전략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혁신적 일처리 방식의 개선

2. 공약사항 이행검토 및 지원방안
3. 지방재원 확보 지원
4. 복지 업무 장기발전 방향 설정 및 업무 발굴
5. 장기 미해결 민원 검토 및 해결방안 수립·운영
6. 일거리 창출과 먹거리 관련 사업 추진

제11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사업소

제4장에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설치) ① 법 제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2와 같다.

제13조(사업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소관사무) 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사업소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제12조의2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7	남촌동 605번지부터 648번지 논현동 423번지, 427번지부터 440 번지, 442번지부터 451번지, 453번지 부터 454번지, 470번지부터 471번지, 473번지 고잔동 625번지부터 742번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민선6기의 구정방향인 구민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부서(기관)를 신설 및 조정하여 구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행정조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조 정 후	증 감
구 본 청	4국 4실 26과	4국 4실 1단 26과	증) 1단
의 회 사 무 국	1국	1국	-
직 속 기 관	3과 1지소	3과 1지소	-
사 업 소	-	1사업소	증) 1사업소
동	19동	19동	-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2월 24일

남동구 조례 제122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회사무국장, 직속기관장(보건소장), 동장”을 “의회사무국장, 직속기관장(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으로 한다.

제2조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 **사업소장** **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1**, 동장 **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으로 한다.

별표 2-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1]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위 임 자 (소관부서)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총무과	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마. 출장처리 바.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 사.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 명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7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4조	
재무과	1. 물품 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 폐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세무1과	1.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나.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다. 개별주택·공동주택 가격확인원 발급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63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6조	
	2. 등록면허세(면허분) 신고서 접수처리	「지방세법」 제3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세무 1·2과	2. 지방세(납세·독촉·체납)고지서 발급	「지방세법」 제55조, 제6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9조, 제21조	
기업 지원과	1. 공단중소기업관리 가. 남동구 공동브랜드 개발 및 지원사업 나.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 다. 외국인 근로자 생활체육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	

위 임 자 (소관부서)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청소과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사업장 폐기물 관리사무 2.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무 3.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폐기물관리법」 제39조 「폐기물관리법」 제68조	
환 경 보전과	1. 건축물의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축관련 규정에 의하여 권한위임된 건축물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변경)신고 수리 및 준공검사 나.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업무 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라. 기술관리인 선임신고 등의 수리 마. 오염피해 발생 등에 따른 보고·검사 2. 악취배출시설 신고(변경) 사무 3.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변경) 사무 4. 특정공사사전신고(변경) 사무	「하수도법」 제34조 및 제37조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 「하수도법」 제40조 및 제76조 내지 제80조 「하수도법」 제66조 「하수도법」 제69조 「악취방지법」 제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건설과	1. 도로의 공사와 유지관리	「도로법」 제23조	
건축과	1. 연면적 1,000㎡이하인 건축행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축허가(신축증축대수선·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설계변경 포함) 나.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등 2. 건축신고(착공 및 사용승인 포함)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축물 철거 등의 신고 나. 건축신고 공작물축조신고 다. 용도변경 신고(표시변경 포함) 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허가 및 존치기간 연장 3. 위반건축물 조사, 관리 4. 건축물 대장관리	「건축법」 제11조, 제16조 및 제19조 「건축법」 제21조 및 제22조 「건축법」 제36조 「건축법」 제14조, 제83조 「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제20조 「건축법」 제78조, 제79조, 「건축법」 제38조	
공 원 녹지과	1.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가. 공원 및 녹지의 유지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2.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가. 가로수 유지관리	「인천광역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제3장	
	3. 공원녹지 점용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남동공단 출장소 폐지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 제기 및 요구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기구인 남동공단 지원사업소를 신설하기로 함에 따라 사업소의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제1조 및 제2조)
 - 사업소 설치에 따른 사무위임 권한 신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34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직권말소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를 위반하여 영업을 폐지하고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게임제공업자(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사항을 직권말소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5. 02. 17. - 2015. 03. 10.(21일간)

○ 직권말소 내역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명	영 업 소	대 표 자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역
제2014-3호 (2014.07.28)	스타 게임랜드	남동구 백범로 343, 2층(간석동)	김 * 준 (82****-1)	영업폐지 후 폐업신고 미이행	<u>직권말소</u> <u>(15.02.17)</u>

○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처분기관 및 문의처

- 처분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문화체육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1008번지)
- 문 의 처 : 032)453-2143 (FAX 453-2139)

2015 년 02 월 17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5-346호

2015년도 연근해 어선장비(기관) 지원사업 신청 공고

어선의 저효율·노후기관 대체로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을 위한 「2015년 연근해 어선장비(기관)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사업 희망자는 신청(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2. 1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신청기간 : 2015. 2. 17 ~ 2015. 3. 16(1개월간)
- 신청(접수)처 : 남동구 농수산개발과
- 신청자격 : 우리구에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가 있는 소유어선의 저효율
노후 기관 교체 대상 어업인(공고일 이전 우리구 등록어선에 한함)
- 지원조건
 - 총사업비 : 223,400천원(보조 60%, 자담 40%), 추가발생 비용은 사업자 부담
 - 지원대수 : 7척(대), 1척당 보조 지원단가 19,200 ~ 19,100천원
 - 사업내용 :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공동구매 단가계약 체결된 장비를 어선에 설치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기관(엔진) 제작증명서 및 거치확인서 등 노후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선박출입항 신고사실 확인서 1부(1년 60일 이상, 2년 90일 이상)
- 사업자 선정 및 우선순위
 - 1순위 : 유류절감 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 2순위 : 법령 제·개정 등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장비·설비를 희망하는 자
 - 3순위 :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

- 4순위 : 육상용 기관을 선박용 기관으로 대체 또는 무동력 어선에 신규로 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5순위 : 노후장비·설비를 대체하고자 하는 자
- 6순위 : 새로운 장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 동일 순위자 상호간의 세부 우선순위는 저마력기관 대체자, 소형어선 사업자 (수협위원 실적이 있는 어업인), 어업인 후계자, 국산기관 사용자 순으로 함

○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 신청(접수)자가 없을 경우 수시로 신청 접수하여 사업자 선정할 계획이며,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농수산개발과(☎ 032-453-60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사업신청서

(LED등, 유류절감장치, 어선기관, 장비·설비)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
	도로명 주소					
	영어중사경력	년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 어가수	호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예정지 (도로명 주소를 기재)			어업면허		
				종류	허가번호(허가기관)	
	사업비 (천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
국고계 (%)			보조 (%)	융자 (%)		
사업내용별 규모 (량)						
해양수산 보조사업 및 용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및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업인 지원을 위한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업인 지원을 위한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수산분야 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수산분야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산분야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세부사업명 :) * 사업별 관련사항만 기재

○ 설치어선(LED등, 유류절감장치, 기관, 장비·설비)

선명(업종), 톤급(선질)	진수년월일	어업허가번호 (어선번호)	최종어선검사		설치 장비명	비 고
			일 자	종류		
					품 명: 기 종(규격) 수 량	

- 설치어선 소유기간 (년 월) :

- 기타 :

2. 사업계획

○ 설치기간 및 계획

업종(톤급, 선질) 품명(기종, 규격 등)	예정공기		사업내용	신청내용
	착공일	준공일		

* 사업내용은 LED등, 유류절감장치, 기관, 장비·설비 설치를, 신청내용은 사업별 수량, 신규, 대체 등을 표시

- 어업인 후계자는 해당 여부 기재 :

○ 자기부담 조달계획

- 부담자 (방법) :

○ 기타(사업지원 효과 등)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15-18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가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5. 03. 05.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15. 02. 23. ~ 2015. 03. 04. (10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연번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1	집단급식소식 품판매업	2009 0199091	아이원	김*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자로 38-1, 1층(장수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5.01.23	2015.03.05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5. 03. 04.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
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될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
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재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032)453-2623

2015. 02.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15-19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5. 03. 06.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15. 02. 24. ~ 2015. 03. 05. (10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연번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1	일반 음식점	2006 -0199246	포포차	최*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511번길 40, 1층(구월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4.12.12	2015.03.06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5. 03. 05.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3

2015. 02. 2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